

4.5.4 예·체능특기자운영규정

제정 2000. 04. 21.
개정 2009. 09. 07.
개정 2013. 08. 06.
개정 2018. 07.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예·체능특기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체능지도위원회설치) 예·체능활동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예·체능 지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지도위원회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학생복지처장, 교무처장, 기획연구처장, 실용음악학과 교수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간사는 학생복지과장이 그 직책을 수행한다. <개정 2013.08.06, 2018.07.26>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며,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예·체능 특기자 선발
2. 특기자의 장학혜택
3. 체육비 예·결산의 심의
4. 경기의 평가 및 종합적인 경과보고
5. 삭제 <2013.08.06>
6. 본 규정의 개정 및 기타 예·체능 관계에 관한 제반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본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복지처에서 관장한다.

제3장 예·체능특기자

제7조(자격) 국가 및 지방 관련부처에서 예·체능 특기자로 결정된 자.

제8조(선발) 특기자의 선발은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제9조(제출서류) 예·체능 특기자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학원서(본 대학교 소정양식)
- 2. 경기실적 증명서
- 3. 기타 관련 증빙자료

제10조(특전) 특기자의 특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회에서 결정된 장학혜택 부여
- 2. 학교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수업출석에 구애 받지 않고 출전할 수 있다.
- 3. 재학 중 학점취득은 특기부분의 실적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부여할 수 있다.
- 4. 졸업종합시험은 특별 사정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특기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 자격 상실, 성적평가절하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 1. 학칙 및 제반학사 내규를 위반한 자
- 2. 자의로 휴학 및 군 입대를 한 자
- 3. 감독(코치)의 지도에 불응하고 태만한 자로 특기자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3.08.06>

학점인정기준

등급	인정학점	평 가 기 준	기타
1등급	A°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대회 4강 이내 입상자 . 국가대표(주니어 포함)로 국제대회 참가 또는 활동하고 있는 자 . 전국규모 경연대회 장려상 이상 수상자 	대회 주전선수 및 후보 선수에 한함.
2등급	B°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규모대회 개인, 단체 입상 . 지방대회 개인, 단체 우승 및 입상 . 전국 및 지방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 	
3등급	C°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소속단체에서 모교의 명예를 빛내고 있다고 인정받은 자 	